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 907호)/전화*761-4203/팩스*782-6659
담당부서 : 대외협력팀 팀 장 : 송자은 부장 담당자 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2-497호

시행일자: 2019.12.23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

업자 대표이사

참 조:

제 목 :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 제정
안내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14599호(2019.12.10.)관련입니다.

3.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허가(신고) 시 제품명 설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」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.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